

의안번호	제 49 호
의결연월일	2009. 11. 26.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신주범 의원 외 1
발의연월일	2009. 11. 12.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49
----------	-----------

발의연월일	2009. 11. 12.
발 의 자	신주범 의원 외 1

1. 제안이유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으므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유치원에도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학교급식법」 제8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다. 그 밖에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중·고등학교”를 “「학교급식법」 제8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u>학교급식법 시행령</u>」 제7조제5항과 「<u>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u>」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와 식품비를 지원하여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산물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조 (목적) ----- 「<u>학교급식법</u>」 제8조와 「<u>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u>」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거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과 <u>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u> ----- ----- ----- ----- ----- ----- -----.</p>
<p>제 3조 (예산 지원 등) ① (생략) ②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지원 대상자는 「<u>학교급식법 시행규칙</u>」 제2조에서 규정한 초·중·고등학교로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 3조 (예산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u>고등학교</u>----- -----.</p>

관계법규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 (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1. "농산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림어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임업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및 농산어촌 주민을 말한다.

3. "농산어촌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

한다.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